

2020

나부터 시작하는 건강나눔

통합21차 정기총회 (16차 대의원총회)

일시: 2020년 05월 09일(토) 오후 2시

장소: 한의원건물 옥상(대전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법동)

※ 우천시 3층 공간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Mindlle Health Welfare Social Cooperative

통합21차 정기총회(16차대의원총회) 행사순서

제1부 식전 행사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이사장 인사
- 코로나19사태 경과 보고
- 감사패 전달
- 폐식선언
- 기념촬영

제2부 정기총회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명날인과 서기 선임
- 경과보고
- 의사일정확정
- 전차의사록 낭독과 승인
- 상정의안 심의
- 폐회선언

제3부 대의원 자치회

자료집 목차

기념사 · 축사	<u>10</u>
코로나19사태 경과보고	<u>13</u>
민들레의료사협 연혁	<u>21</u>
민들레의료사협 현황	<u>27</u>
통합21차 정기총회 경과보고	<u>37</u>
통합20차 정기총회 의사록 (전차회의록)	<u>39</u>

[제21차 정기총회 상정의안]

제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보고 승인의 건	<u>55</u>
제2호 의안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u>61</u>
제3호 의안 2019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u>65</u>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u>69</u>
제5호 의안 2019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u>193</u>
제6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u>197</u>
제7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u>203</u>
제8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u>213</u>
제9호 의안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u>273</u>
기타 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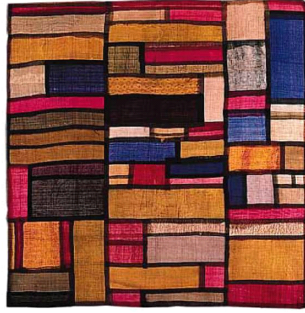
[부록] 정관 · 규약	<u>279</u>
--------------	------------

1

식전 행사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이사장 인사
 - 코로나19사태 경과보고
 - 감사패 전달
 - 폐식선언
 - 기념촬영
-

나눔과 협동의 조각보처럼



한 조각 한 조각만으로는
쓰이기 어려운 조각 천들이 한데 모이고
서로의 색깔과 모양이 어우러져
한 땀 한 땀
아름다운 쓰임새를 만들 듯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나누고 협동하며
한 땀 한 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의지이자 상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향한
한 땀 한 땀을
함께 이루어가시겠습니까?

●● 건강정의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건강증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WHO. 2000〉

●● 건강약속

아플 때, 나를 돌아보게 하소서.
내 몸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응시할 수 있게 하소서.
우주인 생명이 내는 소리에 귀를 열게 하소서.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임을 깨닫게 하소서.
늘 안부를 묻고 살피는 서로가 되게 하소서.
이웃이 아플 때 아픈 내 몸 쓰다듬듯 손 내밀어 잡게 하소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늘 서로 나누며
그것을 통해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게 하소서.
〈2015.10.05.제정, 2018.01.17.개정.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과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하여 의료, 돌봄, 예방 사업을 통해 마을마다
건강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
조직이다.

●● 설립이념, 정관 전문

설 립 이 념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정 관 전 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나눔과 협동의 경제를 지향하는 지역통화운동단체 「지역품앗이 한발레츠」와 참다운 의료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충남지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이후 친구랑 공동육아어린이집, 한발생활협동조합,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등의 협동조합과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창립하였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첫째,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치료과정에 함께 참여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의료, 복지, 노인건강사업을 펼쳐나간다.
셋째, 자신과 가정, 직장, 마을에서 좋은 생활습관과 환경을 만들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의료를 실천한다.
넷째, 주민의 자치와 참여, 협동을 통해 지역의 마을마다 건강한 생활공동체를 만들어간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위 네가지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주권의 원칙을 따르며 세계의 협동조합과 연대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 기념사

민들레 결엔 서로 돕는 이웃이 있기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나 준 식

앞으로 3년간 민들레의료사협을 이끌어갈 제8기 대의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통합 제21차 정기총회가 원만히 성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총회준비위원회와 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조합사무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오늘 총회가 지난 제7기 대의원총회가 3년간 일관되게 일구어온 경영 및 조직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들레가 본격적으로 한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기에, 제7기 대의원총회를 이끌어온 대의원 여러분들과 임직원, 조합원 여러분, 곧 우리 자신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주고 싶네요.

지난 3년간 재정수지 흑자라는 결과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사님 말씀처럼 마른수건을 짜내서 일구어온 면이 있지요. 하지만 그 이면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변화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있었고, 민들레의 존재이유를 주민과 지역사회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방향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건강반, 건강리더를 중심으로 조합원, 지역주민의 건강자치역량을 높이는 시간이었고, 직원조합원들의 사업소 자주관리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었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과제를 지역사회에 본격적으로 제안하고 이끌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기반으로 제8기 대의원총회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멋진 그림들을 펼쳐내보는 희망과 즐거움의 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과정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는 있겠지만요.

우린 감내할 수 있지요? 우리 결엔 언제나 손을 내밀면 함께 돕고 책임지고, 의지하고 나누고자 하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 축사

따뜻한 흙벽돌로 쌓아 올린 집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장 기 흥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저의 어린 시절의 어디쯤엔 아버지와 함께 흙벽돌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오십여 년 전, 그리 멀지 않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는 집을 짓는 주재료가 나무, 흙, 벚짳, 기와 같은 것들이었고, 집을 지을 때도 화장실이나 잠실 등 부속 건물 같은 것은 벽돌을 찍고, 나무를 깎아 직접 짓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올 안에 닭장인가 화장실인가를 지으려고 우리 아버지도 직접 흙벽돌을 만드셨습니다.

벽돌을 찍어 내는 거푸집과 빨간 황토, 그리고 짚더미가 마당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흙에 물을 붓고 벚짳을 잘라 넣고 대충 섞고 나면 우리가 맨발로 질경질경 밟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계족산 황톳길 걷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밟고 다니고 나면 흙과 벚짳이 뒤섞여 반죽이 되어 한 덩어리가 되었고, 그 흙을 거푸집에 넣고 위 아랫 뒤집어 가며 토닥인 다음, 거푸집을 풀고 꺼내놓으면 붉은빛이 선명한 황토 흙벽돌이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 한 장의 흙벽돌이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되었던지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총회를 맞이하여 **민들레의 이미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았더니 ‘흙벽돌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흙 알갱이들이 짓이겨지는 고통을 견디고 하나로 뭉쳐져 한 장의 벽돌이 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려야 비로소 한 채의 집이 지어지듯이, 오늘의 민들레는 ‘의료복지’의 중요성을 자각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조합원’이라는 한 장의 흙벽돌이 되었고, 그 조합원들이 모여 마침내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루어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흙벽돌로 지은 집은 추울 때 덜 춥고, 더울 땐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로 덜 더운 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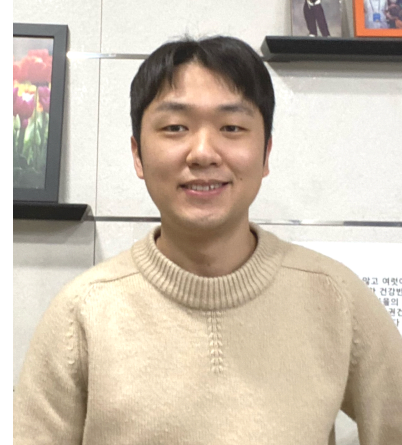
저는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민들레를 찾는 모든 분과 건강과 행복을 공유하는 흙벽돌 같은 집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바로 조합원 한분 한분이 모여서 이룩한 집이라는 것도 의심할 여지 없는 것입니다. 벽돌 한장 한장을 쌓아 올려 집을 짓듯이, 민들레를 이렇게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은 바로 조합원 한 분 한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일선에서 매일 환자들을 대하면서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임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더해져서 민들레는 가장 행복한 공간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21차 총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민들레를 위해 마음을 내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과 열과 성을 다해 일선에서 수고해주신 의료진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 축하

법동 청년, 민들레로 피어나다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케어매니저 정재성



안녕하세요? 저는 민들레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케어매니저 정재성입니다.
지난 5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떨리는 마음을 안고 민들레에 첫걸음을 내딛던 그 날이 떠오릅니다. 사회초년생인 법동 청년에게 지역주민을 만날 기회를 주시고,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민들레 가족 여러분이 있어 가슴 벅찬 201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민들레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케어매니저로 내가 사는 이 동네에서 나의 이웃을 만나 함께 웃고 즐기고 삶을 나누었던, 민들레와 이웃과 나의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 수많은 이야기 중 저는 오늘 협동이라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무심코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전보다 살기 좋아졌는데, 밥을 먹지 못해 돌아가시는 분은 왜 생기는 것인가?”

순간 저는 머뭇거렸고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작 제자신도 이웃 주민을 관심 있게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동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밥을 먹지 못한다고 해서, 걷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지가 부족하다 해서,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는 일 없이 모두가 하나의 조각으로서 완성되는 천처럼 서로 얽히고설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것이 협동이며,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흔하고 너른 들풀과 어우러져 거침없이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중심을 잡고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일원으로, 법동의 한 청년으로 내 이웃과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협동으로 다 함께 피어날 것입니다.

마치면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정기총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사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나와 이웃과 공동체를 돌보는 모든 일에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사태 경과보고

코로나-19사태 경과 보고

COVID-19[한국명: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질환(Coronavirus disease)]

Ⅰ 조합의 감염 방지 활동

□ 조합의 진료 활동에 따른 대처

- 전 의료기관 입장시 발열체크 및 손 소독
 - 의원의 경우 사무직 직원 가용 (발열체크 매뉴얼 수립 및 교육 후 현장에 투입)
 - 마스크 미착용 환자 출입 제한
- 간이 진료소 운영
 - 대구 & 해외 방문이력 있거나 37,5℃ 이상은 별도 설치된 간이진료소에서 진료
- 한의원의 경우 '보폐원탕' 탕약 시판
 - 1재 15만원(원가 제공으로 두루 및 할인적립 대상 제외)

〈발열체크 모습〉	〈간이진료소 모습〉
	

□ 조합의 방호 대처

- 직원 마스크 제공 : 전직원 다회용 마스크 1회 제공
 - 의료직 : KF94 마스크 제공
 - 발열체크 지원 직원: 방호복 및 KF94 마스크, 방호모자, 체온계, 비닐장갑 제공

- 다중 공간 및 접촉 빈번 구역 주기적인 생활소독 실시
- 외부인 출입 일시 작성
- 직원 점심식사 시 비말감염 방지 위해 테이블 중앙 투명 가림막 설치
- 코로나19에 대응 TF팀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논의 대처

□ 조합의 감염 예방 진료에 따른 모범사례로 한국일보 보도

- 2020. 4. 3 한국일보 보도 발췌



② 정부 권고안에 따른 대중 집회 자제 및 사회적 거리 지키기 동참

- 총회 개최 무기한 연기 결정
 - 2020. 2. 21. 총회 연기 공고
 - 전 조합원 문자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 조합원 모임 및 모임 억제
 - 노래교실 등 조합 내 조합원 모임 억제
 - 직원의 대외 활동 자제
 - 전직원 정례 모임 온라인 진행

③ 경영적 손실 발생

- 의료기관 전년대비 3월 매출 실적
 - 3월 1개월간 약 2,000만원 매출 감소

〈의료기관 매출감소 내역〉

의료기관	3월 매출		증감계	비율
	전년	당해		
총계	194,834,132	174,745,443	△20,088,689	90%
의원	73,621,902	70,350,983	△3,270,919	96%
검진	63,976,620	48,285,530	△15,691,090	75%
지센	4,701,960	13,414,400	8,712,440	285%
한의원	21,316,100	15,621,220	△5,694,880	73%
치과	31,217,550	27,073,310	△4,144,240	87%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방호 비용 발생

- 주요 방호 장비 구매 비용 약 700만원 비용 증가

구분	마스크	소독제 (생활,손)	체온계	간이진료소 설치	방호복, 방호모자	직원 식당 가림막설치	계
소요금액 (원)	3,960,750	1,621,793	509,000	405,700	440,080	400,000	7,337,323

④ 재정 손실 극복을 위한 직원조합원 동참

- 원장단 및 직원의 급여 등 기부
 - 총 8명 4,851,000원 목적 기부(2020년 운영비 사용 목적)
- 직원 무급휴가
 - 총 23명 9,918,580원 인건비 절감
- 방문 진료 증대
 - 왕진 및 방문간호 확대를 통한 매출 기여

⑤ 조합원 안위를 위한 조합 활동

□ 원장단의 관련 기고

- 소식지 및 홈페이지 활용
- 문자 발송 및 기고 목록
 - 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2020. 1. 28)
 - ② 코로나19 대처 안내 (2020. 2. 23)
 - ③ 전화상담, 대리처방, 왕진서비스 안내 (2020.03.18.)
 - ④ 자가격리자 건강회복법 (2020. 4. 2)
 - ⑤ 조합원 안위를 위한 전 조합원 문자 발송(2020. 4. 3)

- 코로나 19 피해 조합원을 위한 조합의 도움 전개
 - 조합원 건강안부 설문조사 실시 : 문자를 통한 조합원 요청 파악
 - 지역 연대 단체 후원 물품 활용
 - 민들레 비보험진료비 할인 30% (건강안부 꾸러미)
 - : 폐렴백신 33개, 영양제 수액 33개
 - 농산물, 밑반찬 제공 (밥상안부 꾸러미)
 - : 채소 등 33개, 반찬 33개
 - 심리상담 지원 (마음안부 꾸러미)
 - :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 3회기
 - 후원 단체
 - : 품앗이소비자생협, 도원참사랑 나눔, 열린부뚜막, 마음의숲 등
- 돌봄 공백 해소 기여
 - 민들레 케어매니저와 건강리더를 통한 지역 돌봄 대체 활동 전개

⑥ 조합을 위한 조합원의 도움 :

- 면마스크 제작 지원
 - 고경숙 조합원 - 자비로 재료 구입 후 조합원이 모여 면마스크 100개 제작 후원
 - 홍종순 조합원 - 자비로 재료 구입 후 손수 제작 30개 제작 후원
- 덴탈마스크 후원
 - 오민우 조합원 - 의원에 마스크미착용 환자용으로 덴탈마스크 지원
- 손소독제 지원
 - 박영기 조합원 - 구입이 어렵고 가격이 폭등한 손소독제 20개 지원
- 조합원의 금일봉
 - 이규영 조합원 - 발열체크 직원을 위해 금일봉 제공
- 조합원의 의료기관 이용
 - 어려운 시기에 조합 매출 증대를 위해 내방 진료
 - 스케일링, 건강검진, 한약
- 법1동 행복복지센터에서 환경소독제 14개 지원

⑦ 지역사회와 함께 극복하기 위한 활동

- 법1동 동네방역 자원봉사 활동
- 대덕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의사 2인 참여

<조합원 천마스크 제작 및 기부>



<조합원 천마스크 제작 및 기부>



<이규영 조합원 금일봉 전달>



<박영기 조합원 손소독제 기증>



<민들레 직원, 법1동 동네방역 활동>



<민들레의원 의료진,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⑧ 민들레 조합원의 '이웃안부' 꾸러미 사업

- 취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과 주민의 생활 및 건강안부를 챙김.
- 기간 : 4월~5월

민들레 조합원의 '이웃안부' 꾸러미

코로나19감염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나와 이웃의 안부를 민들레 꾸러미로 챙겨주세요.
민들레조합원이면 누구나 꾸러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문자
- 신청 대상: 민들레 조합원
- 선정 기준: 선착순(꾸러미 소진시까지)
- 이용요금: 무료 (1인당 1개)
- 배분기간: 5월 한달간
- 채소 배분장소: 민들레 우리 건물 1층 3층



신청기간: 4.27(월)~29(수) 3일간

민들레 조합원의 '이웃안부 꾸러미' 이용 방법

- 1 받으신 문자에 답글로 꾸러미를 신청합니다.
문자 예시> 조합원 이름, 페럼에방주사
- 2 선정되신 분은 해당 이용 기간에 배분장소로 옵니다.
- 3 배분장소에서 꾸러미를 수령합니다.
- 4 받으신 꾸러미는 조합원님이 직접 이용하거나 이웃의 안부를 챙기는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선정되신 분은 개별 문자를 드립니다.

◀꾸러미메뉴▶

*1인 1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안부 꾸러미

페럼에방주사
30%할인권
(11만원 → 8만원)

마음안부 꾸러미

심리상담 3회 이용권
↳ 신청 후 11 맞춤 진행

건강안부 꾸러미

영양재수액
30%할인권
(5만원 → 3만원)

밥상안부 꾸러미

식재료 1회 이용권
↳ 배분일시: 5월 6일(수)
11:30~13:00

밥상안부 꾸러미

일반찬 4회 이용권
↳ 배분일시: 매주 금요일
(5월 8, 15, 22, 29일)
11:30~13:00

주관: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후원: 도원창사랑나눔 | 후원: 이웃의손 | 후원: 열린부뚜막 | 후원: 품앗이생협

문의 : 민들레 사무처 042-638-9053 / 010-6334-4606 이자우 국장

●● 감사패 수여

수 상 자	공 로 내 용
이 근 수	<p>귀하는 민들레의 초창기 조합원으로, 사회복지 공직자의 역할을 다하며 지역주민에게 헌신해 왔으며, 대덕구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의 역할을 맡아 민들레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동네돌봄(커뮤니티케어)'을 위한 대덕구와의 민관협력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이끌어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p>
박 영 기	<p>귀하는 민들레 조합원으로서, '지역사회 건강문제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효과적인 건강자원 연계시스템과 협동조합을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개발한 공로가 크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p>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년	2002년	2003년
<p>■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회원8명 민들레의료생협 준비모임 결성</p> <p>■ 민들레의료생협 준비위원회 결성(20여명)</p>	<p>“주민의 참여와 협동으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p> <p>■ 민들레의원·한의원 개원</p> <p>■ 발기인 대회 (발기인50명, 대표 김조년)</p> <p>■ 창립총회 (조합원303명, 이사장 김조년)</p> <p>■ 소식지 창간호 ‘민들레’</p>	<p>“주치의 사업의 기반마련, 조합원 기초조직을 통한 조합운영, 진료권 내 중심을 둔 조합활동”</p> <p>■ 홈헬퍼파견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p>■ 공동체화폐로 만드는 건강한 마을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p>
2004년	2005년	2006년
<p>“조합원 가족주치의, 법동품앗이, 민들레 학교”</p> <p>■ 일본아마가사끼 의료생협 방문 환영회</p> <p>■ 법동품앗이 창립</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건강실천단 발대식 만걸음 걷기 행사(계족산)</p> <p>■ 새터가족과 함께하는 건강운동회</p> <p>■ 민들레 중장기 발전을 위한 워크숍</p>	<p>“체조하고 걷는 해”</p> <p>■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 지정</p> <p>■ 한국의료생협연대 개소식</p> <p>■ 민들레의원 1층 이전</p> <p>■ 전화상담 민들레 교육훈련</p> <p>■ 공동체 자원활동가 교육훈련</p> <p>■ 치과 개원</p>

2007년

“건고 체조하고
자전거타는 해”

- 월평공원-갑천 생태계 지키기 시민대책위
- 「공생공빈」저자 스찌다 다카시 초청강연회
- 암치유 전략워크숍(나준식)
- 공동생협학교

2008년

“지구와 함께 건강해지는 해”

- 태안 자원활동
- 건강실천단 발대식
- 한의원 뜸 전략 기획단
- 슬로건 만들기 대의원 WS
- 창립6주년 등반대회
- 건강캠프 ‘오약사 따라잡기’
- 소액금융지원 약정체결 (사회투자지원재단)
- 의료생협 서비스 품질 WS

2009년

“건강증진활동의
기초를 다지는 해”

- 일본 미나미 의료생협 민들레 방문 및 교류회
- 제1차 이용자 간담회
- 건강증진실 개소
- 창립7주년 야간산행
-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보건분야 개강
- 호숫가품앗이가게 개소식
- 노인복지센터 이전개소식

2010년

“건강한 마을의 기초를
다지는 해”

- 일본 / 일본의료생협 연수
- 건강검진센터 개소
- 비영리경영컨퍼런스
- 가정간호사업소 개소

2011년

“조합원이 함께
민들레를 세우는 해”

- 건강검진 협약 (세이브더칠드런 등)
- 대전지역생협연대 공동산행
- 조합원 방문의 날
- 제2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워크숍
- 임시대의원 총회(둔산진출)
- 둔산민들레 추진위원회
-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대전광역시)

2012년

“새로운 10년을 펼치는 해”

- 둔산민들레 개원
- 황성수 박사 초청 특강
- 한미FTA폐기 동네춧불
- 현미채식건강실천단
- iCOOP씨앗기금 전달식
- 조합원 제안사업
- 우수 사회적기업 표창 (대통령)
- 업무협약(양심과 인권‘나무’)
- 10주년 기념행사, 토론회
- 해고노동자 검진(민주노총)
- 치과진료협약(굿네이버스)
- 여성새일센터 협약
- 여성친화기업 인증
- 대덕치과 이전

2013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해”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 민들레-한밭생협 세화강좌
- 씨앗기금 협약
- 한밭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창립,가입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전환창립
- 의료생협 현지조사 참여 (보건복지부)

2014년

“조합원과 더 많이 만나는 해”

- 좋은 이사 학교
- 장애인부모연대 치과치료협약
- 임시총회(건물매입)
- 세상콘테스트 성장기부문 수상
- 건물매입계약
- 의료민영화반대 기자회견
- 민들레 방문의 날 (비영리협동조합연대)
- 사회적기업 월드포럼 참가자 민들레 방문
- 건물매입을 위한 조합원 행사 진행(구별)
- 건강의 집 담당자 교육
- 사회공헌 한마당 참여

2015년

“흑자경영 원년”

- SK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
- 우수 협동조합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
- 건물매입을 위한 일일찾집 (유성구 조합원)
-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간담회
- 홈커밍데이
- 건강나눔터 “바르게 걷기”
- 전국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우수상(어린이집)
- 지역사회주도형 노인건강돌봄지원사업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문제해결 기술연구 리빙랩사업 선정(연구재단)
- 건물매입완료

2016년

“건강의 집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는 해”

- 예비이사학교
- 1기 건강조직가 양성과정
- 유성구 진잠동 주민참여형 건강마을만들기
- 리빙랩-당뇨자조모임
- 가족친화기업 인증(여성가족부)
- 사회성과인센티브 어워드
- 노인의료복지연구모임
- 우리건물꾸미기, 본부이전
- 아동여성안전병원 협약(대전광역시)
- 민들레 산악회 발족
- 사회적기업 클라우드 펀딩대회 최우수상
- ‘청춘은행’ 시스템 구축
- 스포츠의학센터 개소
- 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 민들레 혁신전략 TTeam 운영
- 여성친화기업 인증(대전광역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약

2017년

“주민참여 보건의료혁신을 통한 대전의 건강한 미래를 주도해가는 해”

- 조세종 감사 사회적기업가 대통령 표창
- 나준식 이사장 사회적기업 유공 대전광역시장 표창
- 드림터 청소년 희망멘토 사업장 인증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개소
- 지역사회주도형노인건강돌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적차해소 연구개발 프로젝트(연구재단)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발굴사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가꾸자 사업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 사회적기업 홍보 캠페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민들레 스마트 주치의
- 2017년 제1차 홍보매체 이용대상 공모(대전광역시)

2018년

“대덕구 지역사회중심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스템 단계적 준비 및 건강리더, 건강반 조직을 통한 주민건강자치력 향상”

- 청소년 진로 동기강화 및 성숙도 향상 기여 감사장(대동종합사회복지관)-1.19
- 대전광역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3월~11월)-2.13
-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지원(3월~2019년 2월)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R&D, 비R&D분야, 산업통상자원부)-3월
- 건강보험공단 의료협동조합 임직원 교육(3.21~22)
-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커뮤니티케어 일본연수(치바)-6.19~23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커뮤니티케어 선진지 연수(후쿠오카) 7.23~25
-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협약-8.24
- 법동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10.01
- 일본케어매니저제도와 교육과정 및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벤치마킹 연수(이바라키)-10.13~17
-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나준식 이사장)-12.12
- 지역, 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관 협력 협약(대덕구청)-12.21
- 건강리더 양성과정(5개 기수) 36명 수료, 청소년 건강리더(1개 기수) 18명 수료

2019년

“마을주도 통합돌봄 모델을 만드는 해”

- 민들레-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업무협약 -4.19
- 2019년도 건강반 46개 승인 및 반장설명회 -4.26
-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경제의만남 마주봄 엑스포개최 -4.30
- 10,11기 건강리더양성과정 시작 -5.7
- 한울야학 장애인 건강교육 진행(장애인주치의사업)
-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 만성질환(고혈압,당뇨)관리 교육 및 영상제작 활용 -7~12월
-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수탁 운영 -6월~
- 둔산치과 사업종료 -6.30
- 사회적경제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수상 -7.5
- ICT기술 활용한 노인치매·낙상예방‘편편’활동 -8~11월
- 건강자원조사위한 동네돌봄단 활동 시작
- 중장년남성위한 꽃중년 건강리더양성과정 -10~12월
- 케어매니저양성 기초교육과정개설 -10~12월
- 장애인체력측정, 장애인 운동프로그램, 금연상담, 건강의달인 프로그램 -9~12월
- 2019 건강반 축제 개최 -11.1
- 민들레대의원씨앗모임 -11~12월
- 제8기 민들레대의원선거 12~1월

2019년도 수상, 인증 내역

일자	내용	수상자
2019. 07. 05	사회적경제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 감사패	민들레의료사협
2019. 11. 23	대덕구청장 표창장 “협동조합 발전과 지역일자리 정책발전 기여”	민들레의료사협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국현정 국장
2019. 12. 31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창장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기여 공로”	민들레의료사협 나준식 이사장 민들레건강검진센터 허애령 원장
2019. 12. 13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기업인증”	민들레의료사협
2020. 02. 0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혁신상 “민들레의료사협 케어매니저양성”	민들레의료사협
2020. 02. 01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로상	민들레의료사협 김성훈 부이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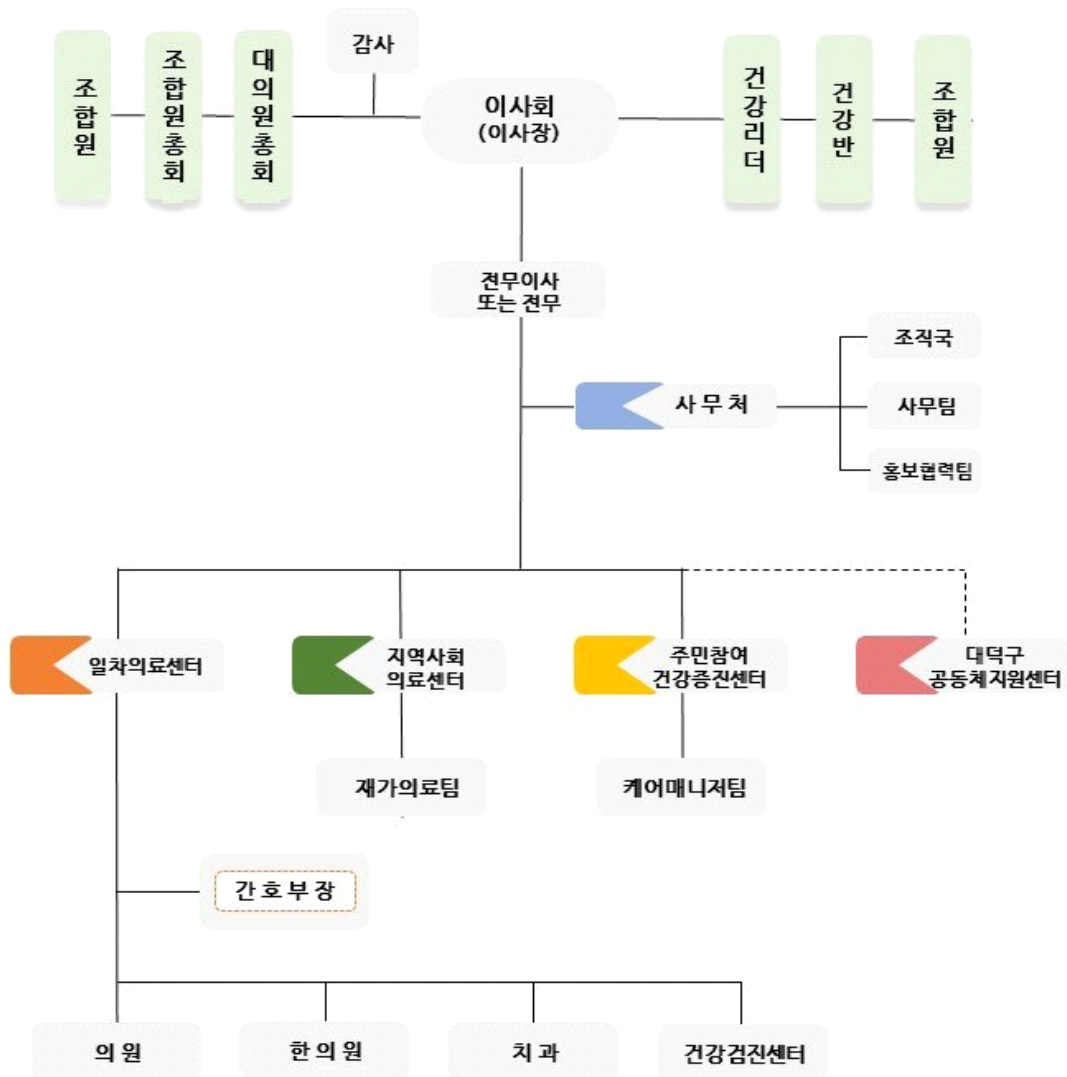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현황

1. 기본 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조합원(세대)	3,607	3,749	3,797
출자금(원)	1,299,503,241	1,291,703,211	1,146,439,922
총자산(원)	2,064,180,853	2,109,944,875	2,187,848,931
직원(명)	41	52	48

2. 조직도



3. 임원 현황

직 위	성 명	임기	민들레 활동
이사장	나준식	2018. 2. 24 ~ 현재	민들레의원장 / 재정위원회
부이사장	김성훈	2018. 2. 24 ~ 현재	전략기획단장 /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권경미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김지훈	2018. 2. 24 ~ 현재	재정위원회
이사	김진호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홍보)
이사	김찬옥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민혜란	2018. 2. 24 ~ 현재	사무국장,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박봉희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봉미경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이사	송직근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조직, 홍보), 재정위원회
이사	신태연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이원호	2019. 2. 23. ~ 현재	총회준비위원장
이사	유승민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홍보)
이사	장기홍	2018. 2. 24 ~ 현재	건강마을위원회(교육)
이사	정운재	2018. 2. 24 ~ 현재	재정위원회
이사 계			15 명
감사	조세종	2018. 2. 24 ~ 현재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소셜경영연구소장
감사	배남익	2018. 2. 24 ~ 현재	공인회계사
감사 계			2 명
임원 계			17 명

4. 부서별 직원 조합원 현황

<2020. 4. 30. 현재>

구 분		현원	비고			
총 계		60명				
임원	임원 계		17명			
	이사장 이사 감사		1명 14명 2명	원장 겸직 전무이사 포함		
	직군		직원 계	43명		
직원	사무기능직	전무이사 또는 전무		0명		
		사무처	사무처장		1명	
			사무팀장 총무회계 등 팀원		1명 3명	
			조직국장 조직팀장 팀원		1명 1명 2명	
			홍보협력팀장 팀원		1명 1명	
			일반기능		1명	
			소계		12명	
	원장단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1명 1명 1명	이사장 · 센터장 겸직	
		소계		3명		
	의료직	일차의료센터	센터장		1명	원장 겸직
			간호부장		1명	검진팀장 겸직
			의원	팀장(간호조무사) 가정전문간호사		1명 -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1명 3명		
팀장 간호사				- 1명	간호부장 겸직	
검진센터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1명 1명 3명	
			한의원	팀장(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1명 2명
치과의원		팀장(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1명 2명		
		소계		19명		
지역사회의료센터		센터장		1명	원장 겸직	
	가정전문간호사 간호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3명 - - 1명	치과의원 겸직		
	소계		4명			
	보건복지직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	센터장		1명	
케어매니저팀장 케어매니저			4명	외부 자원 사업 수탁에 따른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소계			5명			

5. 대의원 현황 (8기)

선거구	이 름
소비자 조합원	김계숙, 김상수, 김연준, 김영순, 김창근, 김창원, 김현철, 남해성, 민순옥, 박미자, 박영순, 박은배, 박지숙, 박희인, 석연희, 석희옥, 송민호, 신용희, 여인표, 오민성, 유승화, 윤자윤, 윤주현, 이광춘, 이기엽, 이선아, 이은영, 이현소, 임경옥, 임은경, 전성옥, 전향숙, 정은희, 정춘택, 조봉순, 조영숙, 주웅식, 천수경, 최미나, 최상선, 최윤나, 최은숙, 최정혜, 최채옥, 추경미. (45명)
후원자 조합원	고미경, 권의경, 김대희, 김도화, 김동중, 김윤기, 김지훈, 김진호, 김현나, 문희균, 박미양, 박병철, 봉미경, 신태연, 유병규, 유인수, 이자우, 임종윤, 정운재, 조세종, 최순례, 최은남, 최장희, 홍은영, 홍춘기. (25명)
자원봉사 조합원	강경숙, 강소영, 김경성, 김성훈, 김준형, 김찬옥, 박미리, 박정희, 박지훈, 서원모, 신경자, 신연순, 신옥영, 오민우, 유난형, 이영은, 임남희, 임주성, 장기홍, 진옥화. (20명)
직 원	국현정, 김문경, 김옥순, 김혜원, 나준식, 남은순, 박종례, 박현주, 양영미, 유미경, 윤미경, 이경민, 이은주, 이지명, 임영신, 장현미, 전경화, 최수이, 한영수, 황신애. (20명)
계	110명

6.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		위 원	실무간사
건강마을 위 원 회	조 직	권경미, 김찬옥, 민혜란, 봉미경, 송직근 / 지역사회조직팀(이자우)	이자우
	교 육	김성훈, 박봉희, 신태연, 양봉석, 장기홍 / 지역사회조직팀(남은순)	남은순
	홍 보	김진호, 송직근, 유승민, 지역사회조직팀(양정수)	송직근
신 사업 추진 단		김지훈, 나준식, 송직근, 정운재 / 경영지원실(한영수, 전경화)	한영수

7. 건강리더 현황

구 분	통합 기수	명단	인원 (명)
어르신 건강리더	1기	김창순, 박상옥, 신귀연, 신명희, 심석순, 이정자, 이정자, 임종분, 정옥금, 정춘택, 조정자,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14
청소년 건강리더	2기	김윤기, 김희진, 박준서, 고경민, 최동민, 오지은, 채지은, 양인준, 임호진, 백찬하, 하예은, 고가원, 김묘선, 정형준, 송성민	15
1기 건강조직가	3기	민혜란, 배영미, 김정준, 이명희, 전경화, 이자우, 송직근	7
1기 건강리더	4기	장기홍, 봉미경, 오민우, 이주현, 장현미, 민혜란, 이자우, 김성훈, 송직근, 김문경, 이정민, 김찬옥, 김수연, 박윤민	14
2기 건강리더	5기	김수진, 임주성, 배영미, 남은순, 박은배, 이금자, 김옥순, 박종례, 박진숙	9
시니어 2기	6기	강영순, 권영주, 김경순, 김경희, 김정자, 김태순, 소유례, 송선희, 서경숙, 심석순, 안영숙, 우종숙, 윤정순, 이정자, 이정자, 정옥금, 정춘택,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한귀분	21
3기 건강리더	7기	최미경, 국경덕, 한영수, 김혜원, 이명희, 이영은, 박경희	7
청소년 2기	8기	강규혁, 고경민, 구재모, 구지영, 김동용, 백찬하, 심지후, 안경민, 안도현, 윤희섭, 이민수, 허재영	12
4기 건강리더	9기	이시현, 최석민, 박미리, 정성미, 최은숙, 김영미, 신지혜, 이순희, 유난형, 신철교, 이임향	11
5기 건강리더	10기	고달숙, 박은용, 안순희, 유난형, 임명숙, 최은숙	6
6기 건강리더	11기	강경숙, 박지숙, 손형우, 신경자, 신경희, 신옥영, 최성옥	7
7기 건강리더	12기	강소영, 국현정, 김현나, 양정수, 이경민, 진옥화, 황정인	7
8기 건강리더	13기	김지영, 김희순, 박지훈, 백종범, 이나영, 이현소, 임은정, 조영숙, 최수이, 함보현	10
2기 건강조직가	14기	국현정, 김현나, 남은순, 송직근, 이경민, 이자우, 황정인	7
9기 건강리더	15기	김경성, 박정연, 신정희, 이호숙, 임영신, 최원숙	6
청소년 3기	16기	구슬기, 구재모, 김민아, 김윤이, 박규정, 오가은, 유한결, 유한울, 이민서, 이윤형, 이은채, 이진, 장영은, 전성민, 정지혜, 정혜원, 홍서연, 황유경	18
시니어 3기	17기	김경희, 김태순, 박미자, 신귀연, 심석순, 오남순, 정옥금, 주웅식, 천재경, 최신강, 홍성례	11
10기 건강리더	18기	강승희, 김영순, 박은심, 배진숙, 양지윤, 이문희, 이순복, 이현희, 임남희, 정혜진, 조미희, 천수경, 최인호	13
11기 건강리더	19기	김미나, 김정현, 김준형, 김희경, 박성호, 석희옥, 신연순, 윤자윤, 이인원, 이현우, 이환성, 임미숙, 임은경, 장현선, 전성옥	15
12기 건강리더	20기	구원일, 김창일, 서원모, 이현소	4
계			214

8. 스스로 조합비(기부금) 참여현황 (2019.12.31)

총액(원)	스스로조합비		일반 후원금		비고
	회원수	금액	후원건수	금액	
37,220,000	207	27,470,000	21	9,750,000	단체 포함

o 스스로 조합비(기부금) 참여자 명단 (2019.12.31)

강수환 강종예 고경숙 고광현 고명순 고명호 고미경 고영철 구영희 국현정 권경미 권기철
 권미양 권의경 권지명 권지연 권지훈 김경희 김광희 김대희 김도화 김동석 김동수 김동중
 김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민희 김병조 김성훈 김수경 김연주 김영선 김영순 김영준 김옥순
 김윤기 김인화 김재용 김종남 김지훈 김진호 김찬옥 김춘화 김춘화2 김태희 김현나
 김현영 김현주 김현태 김형렬 김혜영 김혜원 김희형 나성은 나준식 남은순 남해성 노미정
 문희균 민혜란 박명구 박명화 박미양 박범진 박병철 박봉희 박영민 박유경 박유미 박재연
 박종래 박종례 박종희 박준규 박지숙 박지영 박진희 박찬주 박태일 박현주 박호연 배남익
 백경수 백수홍 백유선 백종범 봉미경 서정빈 석필환 선재규 성광진 손태희 송영숙 송지현
 송직근 신경희 신명섭 신소연 신옥영 신용희 신원식 신지혜 신태연 신현정 신호섭 안영섭
 양봉석 엄경애 엄기정 엄종원 오민우 오선희 오수민 우광제 원종승 유 미 유미경 유병규
 유수진 유승민 유승우 유영희 유인수 유진석 유하영 윤명숙 윤보국 윤창재 이경민 이기병
 이기순 이기업 이덕희 이동철 이민영 이선아 이선영 이성현 이 송 이영은 이영희 이원표
 이은영 이은주 이자우 이정례 이종현 이주선 이지명 이진건 이진미 이충신 이해순 이형옥
 이호진 이해경 임병언 임서연 임영신 임인선 임종윤 임주성 임창국 임효진 장기홍 장병천
 장윤희 전송희 정나현 정연희 정영자 정운재 정종하 정현숙 조병민 조성주 조세종 조영국
 조윤희 조정선 조희중 주영배 주웅식 진옥화 차주연 채유희 천성아 최소영 최수이 최순례
 최은남 최장희 최혜경 한영수 허애령 허영란 홍미옥 홍완기 홍은영 홍종순 홍춘기 홍현채
 황선희 황신애 황 용 황정인 (207명)

9. 일반 기부금 납부실적 : 총21건 / 9,750,000

한국자산관리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외

정기총회

2

-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의사록 서명날인인과 서기 선임
 - 경과보고
 - 의사일정확정
 - 전차의사록 낭독과 승인
 - 상정의안 심의
 - 폐회선언
 - 기념촬영
-

●● 통합21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경과보고

2019.11.28	2020년 임원 및 제8기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승인 - 이사회
2019.12.26	2020년 총회 개최일 및 총회 상정 의안 확정 승인 - 이사회 2020년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승인 - 이사회
2020.01.16	총회준비위원회 1차 회의 -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이원호(위원장) - 총회개최일정 검토
2020.01.31	임원(이사)선거 공고 (~7일) - 선거관리위원회
2020.02.06	총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 2019년도 주요 사업 실적 보고
2020.02.07	임원입후보자 등록 (~7일) - 선거관리위원회
2020.02.10	사업감사 - 이사장
2020.02.13	회계감사 - 이사장
2020.02.13	총조합원 확정 및 조합원 출자금 고지
2020.02.13	총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 2020년도 사업기초 수립 -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
2020.02.14	임원 입후보자자격심사 및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
2020.02.14	총회공고, 개최안내 문자메세지 발송 - 이사장
2020.02.17	총회준비위원회 4차 회의 (확대총준위, 이사회) -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확정 - 총회 포상자 확정
2020.02.21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 권고에 따른 무기한 연기 공고 - 이사장
2020.04.23	총회 개최일 확정 - 이사회
2020.05.09	통합21차 정기총회, 임원선출 선거일

<총회 연기 공고문>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1차 대의원총회(정기) 연기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 2. 22. 14:00 예정이었던 우리 민들레의료복
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 21차 대의원총회(정기)를
무기한 연기하오니 대의원 및 조합원께서는 양지하시
길 바랍니다.

2020년 2월 21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총회 연기 권고문(보건복지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위기 경보 관련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정기총회 연기”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의료사협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의료사협의 정기총회는 「협동조합기본법」제92조 및 제28조에 따
라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개최하여야 할 것이나, 현
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효 중이
므로 의료사협은 이사회 결정 등을 통해 감염 위험이 종료될 때
까지 정기총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영공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별 의료사협이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이유로 부득이 정기총회 및 경영공시를 연기한 경우에 대해서는이
를 정당한행위로 보아 정관 등 위반에 대한 별도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합20차(전차) 정기총회 의사록

전차회의록

의사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서명날인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자료집의 가독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체합니다.

원본대조필 : 이사장 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의사록

1. 회 의 명 :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대의원총회)
2. 공고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3. 개최일시 : 2019년 2월 23일(토) 오후2시(기념식), 3시10분~5시20분(정기총회)
4. 개최장소 : 우리건물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 26, 3층(법동)]
5. 정기총회 의장 : 나준식 이사장

가. 성원 확인

의장이 성원보고를 요청하다. 한영수 경영지원실장이 총원 104명 중 사고 1인으로 103명으로 변경되었으며, 참석 54명임을 보고하다. 이에 의장은 정관에 의거하여 대의원 과반 참석으로 이 회의가 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선포하다.

나. 개회선언

성원을 확인한 의장이 오후 3시10분에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의사록 서명날인인 및 서기 선임

의장이 참석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의사록 서명날인인으로 김도화, 전경화, 이자우 대의원을 선임하고, 서기로는 남은순, 김지영 조합원을 선임한 후 참석 대의원에게 승인을 요청하다. 다수의 대의원들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서명날인인과 서기를 확정하다.

라. 경과보고

의장이 정관과 규약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총회가 성사되기까지의 경과를 주문하다. 이에 이원호 총회준비위원장이 자료집 12쪽을 활용하여, 2018년 12월 이사회 승인으로 구성하여 2019년에 총 7회차 회의를 진행하였음을 보고하고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이견이 없음을 물어 확인하고 오늘의 이 회의가 합당하게 개최되었음을 선포하다.

마. 의사일정확정

의장이 공고와 자료집 11쪽에 상정되어 있는 의안 이외에 추가안건이 있는지 참석대의원에게 확인하

다. 다수의 대의원이 원안대로 확정할 것을 동의하고 재청하다. 의장이 다른 의견이 없는지 확인하고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확정하다.

바. 전차의사록 낭독 및 승인

의장이 지난 통합19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승인해야 함을 설명하고 전차의사록 낭독을 부탁하다. 전차의사록 서명날인인 오민우 대의원이 전차의사록 낭독을 대신해 자료집 26~39쪽에 작성되어 있는 전차회의록을 서면으로 확인 할 것을 제안하고, 참석한 대의원 대다수가 동의, 재청하다. 이에 의장이 총회 의사록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재차 당부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하다. 이은영 대의원이 동의하고,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전차의사록을 승인하다.

사. 상정의안 심의

1) 제1호 의안 : 2018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조세종 감사가 자료집 45쪽~47쪽을 참고하여 감사보고를 하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감사보고 중 의료법 위반에 관한 진행 경위는 자료집 62쪽을 참고하며, 질문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하다. 이원호 대의원이 동의하고 정운재 대의원 외 다수 조합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하다.

2) 제2호 의안 :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승인의 건

의장이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에 대한 의안을 설명하다. 탈퇴 신청시 총회를 거쳐 출자금을 환급하는 규정을 설명하고, 의안에 대해 한영수 대의원이 동의하고, 유승민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8년도 탈퇴 조합원 101명에게 출자금 16,683,000원을 환급하는 것을 승인하다.

3) 제3호 의안 : 2018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한영수 경영지원실장이 자료집 55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정관에 의거하여 변경 건을 총회에서 사후 승인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김찬욱 대의원의 동의하고, 석연희 대의원이 재청한 후 의장이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018년 사업예산 변경 사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4) 제4호 의안 :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의안 설명을 요청하다. 자료집 60쪽~67쪽의 총평을 중심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사업보고를 하고, 자료집 146쪽~158쪽의 경영보고를 중심으로 정운재 이사가 결산(안)을 설명하다.

- 정운재 이사: 일반 사업체들이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다. 현실과 규정의 괴리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렇지만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의장: 142쪽의 외부 자원사업 수행에 따른 조합 재정 기여를 보면 프로젝트 사업의 공로를 알 수 있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오민우 대의원이 동의하고, 김도화 대의원이 재청

하여 사업보고 및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5) 제5호 의안 : 2018년 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정운재 이사가 의안을 설명하다. 의안에 대해 **홍은영**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박미양**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8년 당기 순이익 24,783,983원은 기존의 손실금 917,610,474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한다.

6) 제6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자료집 165쪽~180쪽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반영,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개정 및 규약의 개정, 의료법상 관련 조항(의료법 제33조제9항) 신설로 의료기관 소재지 정관 반영하는 내용임을 설명하다. 또한 또한 개정(안)의 제61조제4항 지역사업형 누락된 문구 삽입을 요청하고, 변경에 따른 각 조의 번호는 정관 및 규약의 변경 후 상관관계에 따라 일괄 조정됨을 확인하다.

정관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전문에서 밝힌 네가지 이념에 따라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의료의 공공성 실현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관 필수기재 사항 반영.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 <삭제> 5.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p>	<p>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법동)에 둔다. ② 지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7(탄방동)에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추가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6, 1층(법동) 2.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한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2, 2층(법동) 3.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3번길 28, 2층(법동) 4.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치과의원: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7, 2층(탄방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재지 삭제.
<p>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p>	<p>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조합원 정의 추가.

<p>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p> <p>5. 단체조합원</p>	<p>4.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p> <p>5. 단체조합원: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단체출자를 한 법인</p>	
<p>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p>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5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기수정.
	<p>제21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p> <p>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p> <p>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p> <p>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른 조문삽입.
	<p>제22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1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조문삽입.
<p>제21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p> <p>1. 차량 및 시설 사용료<삭제></p>	<p>제23조(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 할 수 있다.</p> <p>1. 시설 사용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조항 추가로 인한 조문번호 수정 (이하 조문 순연).
<p>제66조(법정적립금)</p>	<p>제25조(법정적립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정관 제66조를 제25조로 이동.
<p>제67조(임의적립금)</p>	<p>제26조(임의적립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정관 제67조를 제26조로 이동.
<p>제25조(대의원총회)</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변경전 정관의 임기로 선출된 대의원도 변경후에는 변경된 정관을 적용한다.<삭제></p>	<p>제28조(대의원총회)</p> <p>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변경으로 인한 경과 규정 삭제.
<p>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p>	<p>제3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제30조(임시총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제31조(임시총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p>	<p>제32조(총회의 소집절차)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p>	<p>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p>	
<p>제33조(총회의 의사)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4조(총회의 의사) ③ 총회는 제32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40조(총회의 회기연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0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p>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문번호 변경에 따른 수정
<p>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삭제>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p>제43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감사 및 표준정관에 따라 제2항 삭제.
<p>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되 선출하여야 할 임원의 정수는 임원선출선거공고 3일전까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삭제>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p>	<p>제45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5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 표준정관: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0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0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p>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제4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기수 임원</p>	<p>제4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의 임기종료일까지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p> <p>⑤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p> <p>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p> <p>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p> <p>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p>	<p>제51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p> <p>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p> <p>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p> <p>④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p>제65조(운영의 공개)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보고서(정관 제56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삭제> 	<p>제58조(운영의 공개)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관, 규약,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회 활동 상황 사업결과 보고서(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사업결과 보고서에 정관 제61조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p>제57조(사업의 종류)</p> <p>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삭제> 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삭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임대사업 <p>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p>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상호 구분 계리되어야 한다.</p>	<p>제61조(사업의 종류)</p> <p>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임대사업 <p>③ 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p> <p>④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유형은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⑤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필수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기타 사업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등이 될 수 있다.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은 아래 내용 중 정관으로 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서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 '취약계층 고용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

		<p>분의 40 이상일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4. '위탁사업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입이 전체 사업 수입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5. '기타 공익증진형'으로서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또는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으로 한다.</p> <p>•주 사업으로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는 해당 유형을 모두 기재</p>
<p>제58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57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p> <p>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1천만원 이내로 한다.</p> <p>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5%로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한도 이내로 한다.</p> <p>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해당 대출에 적용된 이자율의 1.5배를 최고 한도로 소액대출계약시에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 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삭제></p>	<p><조문 삭제></p>	<p>• 사업 미시행에 따른 조문 삭제</p>
<p>제59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p> <p>② 조합원 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 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p> <p>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1백만원 이내로 한다.</p> <p>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p> <p>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p>	<p><조문 삭제></p>	<p>• 사업 미시행에 따른 조문 삭제</p>

<p>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p> <p>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p> <p>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7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삭제></p>		
<p>제60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p> <p>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p> <p>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p> <p>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p> <p>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p> <p>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p> <p>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p> <p>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삭제></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p> <p>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p> <p>7. 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한다)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사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p>	<p>제62조(사업의 이용)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p> <p>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p> <p>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p> <p>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p> <p>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p> <p>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p> <p>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자</p> <p>7. 해당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사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p>

<p>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p> <p>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삭제></p>		
<p>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u>3개월 이내</u>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6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u>2개월 이내</u>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p>	<p>제65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가 필요할 때 설치한다.</p>	<p>• 표준정관에 따라 수정.</p>
<p>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p>	<p>제68조(손실금의 보전)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25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p>	<p>• 조항 변경에 따라 수정.</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p> <p>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p> <p>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p> <p>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 (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p> <p>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p>	<p>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1차 개정) 2013년 2월 23일 일부개정</p> <p>제3조(2차 개정) 2013년 7월 11일 일부개정</p> <p>제4조(3차 개정) 2014년 2월 22일 일부개정 (2014.4.21 보건복지부장관 인가)</p> <p>제5조(4차 개정) 2015년 2월 28일 일부개정 (2015.4.9 보건복지부장관 인가)</p> <p>제6조(5차 개정) 2017년 4월 4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7조(사업의 종류) 일부개정</p> <p>제7조(6차 개정) 2019년 2월 23일 제2조(목적),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제18조(출자), 제28조(대의원총회), 제29조(정기총회), 제42조(이사회의 의사), 제44조(임원의 경수),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65조(운영의 공개), 제57조(사업의 종류), 제58조(소액대출: 삭제), 제59조(상호부조: 삭제), 제60조(사업의 이용), 제6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일부개정</p>	

규약개정(안)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총회운영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총회개최 공고 및 통지) ①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조합원에게 우편 또는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중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정관의 내용에 맞춰 수정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정관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휴회 또는 회기 연장) ② 제1항의 회기 연장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정관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3인의 의사록 기록, 서명날인인이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의사록) ① 총회의사록은 총회에서 선출한 2인의 서기가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및 선거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관계조항의 내용에 맞춰 수정
출자좌수감소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67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1조제5항에 의거 조합원의 출자좌수 감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단체출자에 관한 규약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한 공익적 시민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단체의 정의] 단체출자의 단체라 함은 정관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법인으로 국내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른 단체의 정의 명확화
과태금에 관한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3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정관 제24조제3항에 의거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관 조항변경에 따라 수정

의장이 참여 대의원에게 의견 및 질문이 있는지를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이자우 대의원이 동의하고, 신용희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정관 및 규약 개정(안)을 승인한다.

7) 제7호 의안 : 임원(이사) 선출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이원표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 선출을 위하여 의장석에 앉아 진행한다. 자료집 183 쪽을 참고하여 선거를 진행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고 입후보하였음을 설명한다. 임원(이사) 1명의 사임으로 인한 보궐 선거이며 선출될 임원의 정수는 이사 1명, 임기는 현 임원의 잔여기간임을 설명하고 입후보자 소개를 진행한다. 이원표 선거관리위원장이 1인 입후보에 따라 입후보자의 찬반 투표의 절차로 진행됨을 설명하고 참석 대의원 모두 찬반 투표 진행 여부를 묻고 선거 절차를 확인한다. 이원호 이사 후보의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선출을 참석 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모든 대의원의 동의로 임원 선출을 승인하고 이원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원호 이사후보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

기호	이름	구 분	당선 여부
1	이원호	이사	당선

이어 나준식 의장이 의안을 진행한다.

8) 제8호 의안 : 대덕 · 둔산 치과 통합운영(안) 승인의 건

의장이 의안설명을 요청하여 자료집 187~191쪽을 중심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설명한다. 조합원 의견 조사 결과 현행 유지보다 대덕으로 통합운영에 대한 찬성 비율이 높음을 확인한다.

- 이자우 대의원: 둔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
- 한영수 경영지원실장: 작년 4월에 2년 계약했으므로 내년 4월까지 유효하다. 임대는 아이쿱 연합회 관련,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 해지일 경우 세입자 부담, 현재 보증금 1억과 월세 385만원, 관리비 지출, 권리금이 있을 수 있다.
- 정운재 이사: 한발생협과 협동조합의 기본 이념과 일치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2인에서 1인 체제로 전환하는 등 존속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부담 요인이 커지고 기반이 없는 상황이며, 치과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의 유지도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결단이 필요하다.
- 의장: 둔산에 처음 시작할 때도 논란이 많았다. 협동조합의 협동에 의존하여 시작, 부피를 줄이고 집중을 할 시기와 체계를 마련해야겠다. 여러 어려운 사정이 있어 두 원장님과 직원들이 통합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고 여러 의견을 주셨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추가로 더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김계숙 대의원이 동의하고, 이종현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원안대로 대덕 둔산 치과의원의 통합 운영을 승인한다.

9) 제9호 의안 :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장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의안설명을 요청한다. 자료집 196~201쪽의 사업기조를 중

심으로 송직근 전무이사가 설명하고, 자료집 219~227쪽의 예산수립 기초를 중심으로 정운재 이사가 예산(안)을 설명한다.

- 의장: 검진의 공간 확장과 인력 준비 등 보완이 필요하다.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민관협치와 관련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정운재 이사: 치과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 의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직원들이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추가로 더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 묻고, 없음을 확인한 후 승인절차를 진행한다. 봉미경 대의원이 동의하고, 이송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10) 제10호 의안 : 차입금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이 229쪽의 차입금 한도를 20억원 이내로 하는 안건을 설명하고 참여 대의원에게 승인요청을 한다. 이원호 대의원의 동의와 정운재 대의원 재청으로 2019년도 차입금 최고 한도를 현재의 차입금 1,453,925,542원을 포함한 총 합계액 기준 20억원 이내로 할 것을 승인한다.

11) 기타의안

의장이 자료집 18쪽 일반현황에 있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 3,749명, 총출좌자 수 128,991좌, 총 출자금 1,291,703,211원에 대하여 확정 승인을 대의원에게 요청한다. 이에 오민우 대의원이 동의하고, 홍은영 대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대의원이 재청하여 2018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수 3,749명, 총 출좌자수 128,991좌, 출자액 1,291,703,211원이 총 출자금임을 확정한다.

아. 폐회선언

의장(나준식 이사장)이 이외의 여타의안이 있는지를 대의원에게 묻고, 없음을 확인하여 오후 5시 20분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한다.

자. 의사록 서명 날인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20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명날인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차. 참석 대의원 명단(57명)

권의경	김계숙	김대희	김도화	김문경	김성훈	김옥순	김윤기
김찬옥	김창원	김혜원	나준식	박미양	박종례	변동명	석연희
송이석호	송직근	신경자	신귀연	신용희	신현정	양봉석	오민우
오순희	유미경	유승민	유인수	윤미경	이선아	이 송	이순순
이원호	이은영	이자우	이정민	이종현	이주현	이지명	장사라
장현미	전경화	정운재	정은희	조미선	조세종	진옥화	최수이
최장희	최재덕	한영수	홍미자	홍은영	홍춘기		이상 54명

※ 성원보고 후 참석 대의원 : 김창근, 봉미경, 신종섭 (3명)

2019. 2. 23.

의 장	나 준 식	(인감)	서명날인인	김도화	(인감)
				전경화	(인감)
				이자우	(인감)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